



연금저축계좌(펀드) 상품설명서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상품명	■ 연금저축계좌
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울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 연금저축계좌 가입 및 납입

계좌 종류	■ 연금저축펀드 : 자본시장법 (§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 중개 ->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통해 가입 ■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법 (§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계약 -> 보험회사 통해 가입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¹⁾ + ISA만기 계좌 전환 금액²⁾ 1) 전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 연금저축 합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참고)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 가능 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										
세액 공제	■ 연간 600만원 + ※ ISA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과세 표준</th><th>세액공제 한도</th></tr> </thead> <tbody> <tr> <td>기준 없음</td><td>6백만원</td></tr> <tr> <td></td><td>+</td></tr> <tr> <td></td><td>※ ISA 전환금액의 10%</td></tr> <tr> <td></td><td>(300만원 한도)</td></tr> </tbody> </table>	종합소득과세 표준	세액공제 한도	기준 없음	6백만원		+		※ ISA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종합소득과세 표준	세액공제 한도										
기준 없음	6백만원										
	+										
	※ ISA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종합소득과세 표준	공제율
	4천 5백만원 이하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¹⁾	16.5%
	4천 5백만원 초과 (총급여액 5.5천만원 초과) ¹⁾	13.2%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저축계좌 운용 및 이체

운용 방법	■ 연금저축보험 : 사전에 금융회사에 의해 설계된 방식에 따라 운용 ■ 연금저축펀드계좌 : 가입자는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 -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연금저축전용펀드(종류형 펀드의 연금저축계좌 전용클래스 포함) 및 ETF (인버스,레버리지 상품 금지)에 한하여 편입 가능
보수 및 수수료	■ 개별 연금저축 계좌 약관 및 운용 상품별 투자설명서 참고
계좌 이체	■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 - 서로 다른 종류(신탁, 펀드, 보험)간의 이체도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① 연금계좌('01년1월 이후 개설)에서 타 연금저축 계좌('13년3월 이후 개설)로의 전액이체 ②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 경과한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 IRP)로 전액 이체 ③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 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 ④ 개인형 IRP에서 다른 개인형 IRP로의 전액 이체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 -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승계신청을 하여야 함. -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

■ 연금 수령 및 인출

연금 수령	①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및 가입 기간 5년 경과 (※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5년 경과 요건 미적용)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연금수령 가능 ② 연금 수령 한도 : 연금수령이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에 해당 $\frac{\text{연금 계좌의 평가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1) 연금계좌의 평가액 : 기준가 X 누적좌수 2)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합산한 연차												
중도인출	① 일반적인 경우 :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이 가능하나 -> 연금외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 ②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 연금수령으로 간주 - 신청 시기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 신청 - 사유 및 증빙 자료 <table border="1"> <thead> <tr> <th>부득이한 사유</th><th>인출 한도</th></tr> </thead> <tbody> <tr> <td>천재 지변</td><td>X</td></tr> <tr> <td>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td><td>X</td></tr> <tr> <td>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td><td>O₁₎</td></tr> <tr> <td>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td><td>X</td></tr> <tr> <td>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td><td>X</td></tr> </tbody> </table> 1) 아래 3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ㄴ)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X 150만원 (ㄷ) 200만원	부득이한 사유	인출 한도	천재 지변	X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X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O ₁₎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X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X
부득이한 사유	인출 한도												
천재 지변	X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X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O ₁₎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X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X												

■ 적용 세제

1. 연금저축계좌를 **연금 외 수령** 하는 경우 **연금수령 대비 고율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의 **자금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자는 연금수령 및 자금 인출 전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세제외 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금인출 순서	■ 1.과세제외금 -> 2.이연퇴직소득 -> 3.과세대상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 ※ (참고) 과세제외 금액의 인출 순서 1.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2.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 3.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													
연금 수령	①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 ②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 ※ 단,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시, 60% 1)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연금수령연차가 아닌 최초 연금수령한 연도부터 실제 연금수령한 연도를 계산하여 10년을 의미 ③과세대상소득 : 연금소득세(3.3% ~ 5.5%)적용 <table><tr><th colspan="2">구분</th><th>확정형연금</th><th>종신형연금 (생명보험사)</th></tr><tr><td rowspan="3">나이 (연금수령일 현재)</td><td>만 70세 미만</td><td>5.5%</td><td rowspan="2">4.4%</td></tr><tr><td>만 80세 미만</td><td>4.4%</td></tr><tr><td>만 80세 이상</td><td>3.3%</td><td>3.3%</td></tr></table> ※ 연간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 제외, 퇴직소득재원 및 부득이한사유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소득자는 유·불리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구분		확정형연금	종신형연금 (생명보험사)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만 70세 미만	5.5%	4.4%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구분		확정형연금	종신형연금 (생명보험사)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만 70세 미만	5.5%	4.4%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연금 외 수령	①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 ②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100% 부과 ③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세 16.5% 적용													

※ 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

구분	연금계좌	연금수령	연금 외 수령
과세제외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①)	과세제외 금액	과세제외 금액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②)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③)		
이연퇴직 소득	이연퇴직 소득 (④)	퇴직소득세 의 60~70%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⑤)	연금소득세 (5.5 ~ 3.3%)	기타소득세 (16.5%)
	연금계좌의 운용소득 (⑥)		

■ 가입자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개별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내에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원금 일부 손실 또는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 등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연금 외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가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5% ~ 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정예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주요 권리 및 민원처리,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限)	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법 계약 해지 사유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를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융회사는 자료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지점 내방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KCGI자산운용 고객센터(1588-5533), 및 홈페이지(www.kcgiam.com) 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5조제①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